

Muan Web Contents

2021년 12월 07일 20시 56분



목차

목차	2
자동차의무보험	3
자동차 책임보험(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) 가입 안내	3
운영근거	3
보험가입대상	3
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	3
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	3
기미가입 지연가입 :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	3
보험미가입 운행시 : 범칙금부과 또는 형사처벌	4
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	4
주의사항	4

자동차 책임보험(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) 가입 안내

- 의무(책임)보험은 365일 공백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휴일(토, 일요일 등) 종료 시에는 미리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.

운영근거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-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보험가입대상

모든 차량(자가용, 업무용, 영업용) 및 이륜자동차, 건설기계

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

구분		미가입기간 10일 이내	미가입기간 11일 이상	최고과태료
자가용	대인 1	10,000원	1일당 4,000원 추가	60만원
	대물	5,000원	1일당 2,000원 추가	30만원
영업용	대인 1	30,000원	1일당 8,000원 추가	100만원
	대인 2	30,000원	1일당 8,000원 추가	100만원
	대물	5,000원	1일당 2,000원 추가	30만원
이륜차	대인 1	6,000원	1일당 1,200원 추가	20만원
	대물	3,000원	1일당 600원 추가	10만원

※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/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, 체납시에는 최고 75%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.

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

기미가입 지연가입 :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

- 비사업용 : 최대 90만원
- 사업용 : 최대 230만원
- 이륜차 : 최대 20만원

보험미가입 운행시 : 범칙금부과 또는 형사처벌

- 경미한 경우 : 범칙금부과
- 사고발생, 2회 이상 적발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변호판 영치

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

종류		위반내용 및 금액	최고금액	관련법령
무보험 운행	범칙행위자 (1회 적발시 또는 단순적발시)	가. 비사업용자동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승용 : 40만원 ■ 승합, 화물, 특수, 건설기계 : 50만원 ■ 이륜차 : 10만원 	50만원 (범칙금)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,2항 및 제51조
		나. 사업용자동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승합 : 200만원 ■ 승용, 화물, 특수, 건설기계:100만원 	200만원 (범칙금)	
	검찰송치자 (2회 이상 적발시)	사업용, 비사업용차량	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

주의사항

- 폐차시 폐차장 입고증만으로는 보험면제 대상이 아니며, 폐차인수증명서만 면제가능
- 차량초과 말소 요청시 최소 3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차량 말소 전까지 보험가입 하여야 함
- 이륜자동차 단순고장, 사고등 미사용시 보험 만료기간 내 읍면에 폐지신고를 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됨
- 담당부서 :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
- 전화번호 : (061)450-5678, 5680, 5691

MUAN

Web Contents

 무안군